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교정직공무원승진임용규정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정성호 (법무부장관)
제출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교정직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현행 「교정직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6조는 승진소요최저연수가 경과한 사람이면 누구든지 승진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승진후보자 명부상 순위와 무관하게 다수의 응시자가 시험에 참여하게 되어 승진후보자 명부 제도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승진임용의 공정성·효율성 측면에서 문제가 제기되어 왔음

특히 5급 및 6급으로의 승진시험은 교정직공무원의 핵심 관리직 진입 단계로서, 승진후보자 명부상 순위가 높은 우수 인재가 실질적으로 시험 승진의 기회를 우선적으로 부여받을 수 있도록 응시대상 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 제10조제3항은 5급 일반승진시험 제1차시험 합격자에 대해 "다음 회 시험에서만" 제1차시험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다음 회 시험에서 다시 불합격하거나 다음 회 시험을 응시하지 않는 경우 면제 혜택이 소멸되는 바, 이를 개선하여 제1차시험 합격자가 이후 시험에서도 지속적으로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응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험 운영의 합리성을 제고하고자 함

이에 5급 및 6급으로의 승진시험 응시대상을 승진후보자 명부에서 순위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시험승진으로 임용하려는 결원 수의 2배수 이상 10배수 이내 범위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제한하고, 제1차시험 면제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5급 및 6급 승진시험 응시대상 제한 (안 제6조)

5급 및 6급으로의 승진시험은 승진후보자 명부에서 순위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시험승진으로 임용하려는 결원 수의 2배수 이상 10배수 이내 범위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

나. 5급 일반승진시험 제1차시험 면제 범위 확대 (안 제10조제3항)

"다음 회 시험에서만"을 "이후 시험에서"로 변경하여, 제1차시험 합격자가 이후 실시되는 시험에서 지속적으로 제1차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인사혁신처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교정직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

교정직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승진시험 요구일”을 “승진시험은 요구일”로, “사람은 승진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를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5급 및 6급으로의 승진시험은 승진후보자 명부에서 순위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시험승진으로 임용하려는 결원수의 2배수 이상 10배수 이내 범위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제10조제3항 중 “다음 회 시험에서만”을 “이후 시험에서”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5급 승진시험 응시대상에 관한 경과조치)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 시행 후 실시되는 2026년도 5급 승진시험의 응시대상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제1차시험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후 실시되는 2026년도 5급 승진시험 제1차시험에 합격하고 제2차시험에 불합격한 사람 중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10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응시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승진시험에 응시하여 불합격한 사람이 이 규정 시행 후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응시대상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승진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그 응시하지 못한 회차는 제7조제2항의 적용에 있어 응시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조(승진시험 응시대상) <u>승진시험 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5급부터 8급까지의 승진후보자 명부 중에서 임용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가 지난 <u>사람은 승진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u> 다만, 제7조의 응시제한사유에 해당하거나 임용령 또는 임용시험령 등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사유나 응시자격 정지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u> <u><신 설></u>	제6조(승진시험 응시대상) ① <u>승진시험은 요구일 -----</u> ----- ----- ----- <u>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한다.</u> ----- ----- ----- -----. ② <u>제1항에도 불구하고 5급 및 6급으로의 승진시험은 승진후보자 명부에서 순위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시험승진으로 임용하려는 결원 수의 2배수 이상 10배수 이내 범위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한다.</u>
제10조(5급 이하 공무원으로의 승진시험 방법) ①·② (생략) ③ 5급 일반승진시험의 제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제10조(5급 이하 공무원으로의 승진시험 방법)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본인이 응시요건을 갖추어 응시 하는 <u>다음 회 시험에서만</u>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 --- <u>이후 시험에서</u> -----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교정기획과	
연 락 처	(02) 2110 - 3805